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Guidelines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Library

노영희 (Younghee Noh)**

김태경 (Tae-Kyung Kim)***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을 제안하되,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적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개개 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안)을 기초로 하여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법 및 정책, 일반적인 내용,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도서관의 외주업체 등으로 구분하여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으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의 대처방향 마련,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도서관 최적화, 관련법령에의 반영,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등을 고려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propose library privacy guidelines to be applicable in any library without distinguishing library types. Individual libraries can refine, modify, and use them to fit their situation, using the guidelines as a base. The library privacy protection guideline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composed of purposes, definitions, scope of privacy, law and policy, general information, the library's job performance on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and library subcontractors. The development objectives and utilization direction of the library privacy guideline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meant to provide a guide for change according to the amended provision of library "Privacy Act" implementation, optimization of library Privacy Directive, a reflec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tandardization-oriented library privacy guidelines.

키워드: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이용자 프라이버시, 도서관 최적화
librar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rivacy guideline, user privacy,
library optimization

* 본 연구는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사무관(ktk0119@korea.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5년 5월 27일 ■ 최초심사일자: 2015년 5월 27일 ■ 게재확정일자: 2015년 6월 17일
■ 정보관리학회지, 32(2), 25-61, 2015.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2.02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해서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을 포함한 정보 서비스 제공자들의 주요 임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관심주제, 직업, 자주 가는 곳, 최근에 본 책, 좋아하는 장르를 알아야 하며, 또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알아야 한다.

즉, 도서관 등 정보서비스 제공자들은 대출 반납기록, 컴퓨터 이용기록, 온라인탐색서비스 기록, 관외서비스 기록, 도서관데이터백업자료, 주민등록번호가 요구되는 도서관자동화기기, 상호대차 기록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상당히 개선시켜 왔다. 그러나 서비스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CCTV를 통한 모니터링 등으로 도서관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졌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 이용자가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로는 법적·정치적인 이유로 이용자의 이용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침해되는 경우, 그리고 이용자가 의도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모니터링 당하는 경우 등이 있다.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논의는 해외의 경우 매우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 보통 이용자의 지적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Kim & Noh, 2014; Noh, 2014).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도서관과 도서관사서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과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 도서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도서관 개인정보가이드라인(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 관종을 포괄하는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는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국내의 각 관종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현장사서들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관련 질문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은 현장사서들이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질의나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첫째, 국내외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조사, 도서관 이용자 정보관리 현황 조사 및 문제점 파악,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도서관 이용자 정보 가이드라인 조사, 도서관 사서 대상 프라이버시 교육 효과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

로 조사하였다.

둘째, 국내외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관련 자료,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 사례는 물론 국내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개인정보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자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 도서관 환경에 적합한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정부기관 및 도서관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지침이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조사·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고품질의 도서관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선행연구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문제는 도서관 및 사서의 사명으로서 도서관인 윤리선언과 같은 문서에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근을 제공하고, 컴퓨터 기반 레코드를 유지하고, 도서관 자원의 사용을 추적하거나 대출반납을 위해 전자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

인을 구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노영희, 2012b, 2012c).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에 대해 언급하는 성문화된 정책이며, 도서관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의지의 기술이다(Falk, 2004). 그러나 프라이버시 정책의 내용이 잘 개발되어야만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은 도서관 프라이버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연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그 사회의 법이나 규정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와 맥락을 같이 해야 것이다(Enright, 2001).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도서관의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 지침을 제시하기 전에, '이 가이드라인은 ALA의 윤리선언에 기초하고 'New York State Law'의 적용을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4).

도서관에서 프라이버시 정책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한 Sturges(2002)는 윤리적인 면, 법적인 면, 실제적인 면, 공공의 관심사 반영 측면, 그리고 이용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했는지의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여 제안하였다. 이중 가이드라인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자가 있으며, Tripathi와 Tripathi(2010)는 '윤리'가 모든 직업 영역에서 핵심적 개념이라고 주장하며 가이드라인의 윤리적 측면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기도 했

다. 김혜선(1994), 손연옥(1996), 김혜경과 남태우(2004), 강순희(2003) 등도 도서관 이용자의 대출이력보호, 이용자비밀유지 등을 사서직의 윤리 측면에서 논하였다. 특히 강순희(2003)는 사서 및 정보서비스직의 윤리의식 연구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혹은 대출기록 등의 정보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보호하는 규정이나 정책을 가진 도서관이 많지 않았음을 밝히고, 외부의 검열에 의해 이용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정보기술적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다(FiFarek, 2002; Sturges, Teng, & Iliffe, 2001). 또한 Loughborough 대학교의 Legal and Policy Research Group은 디지털도서관 환경에서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문제를 조사하고 정보전문가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Sturges, Teng, & Iliffe, 2001).

박상근(2010)은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보유 및 파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제안하였다. 그는 국내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공공도서관 개인정보 담당자 및 처리자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임진택과 김양우(2015)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현

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데 제도적인 제한점이나 문제점은 없는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 참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해결방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 ‘개인정보’와 관련된 ‘전문 교육’의 강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공통된 세부 지침의 마련 등이다.

이상과 같이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과 관련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할 것으로 국가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차별성이 없으며 도서관과 사서가 업무를 수행할 때 지침이 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고 있고 표준화도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되고 있으며(김기성, 2006; 노영희, 2012a, 2012b), 최근까지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 지침과 가이드라인 개발이 요구된다는 연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임진택, 김양우, 2015). 따라서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2 국내외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등을 수립한 사례는 국내의 경우 비교적 최근이며, 해외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래전부터 개발되어 여러 도서관에

적용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LA)가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관중별로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다른 도서관들은 이를 응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주로 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국내 사례

1)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2004년 4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무인좌석발급기가 도입되어 있는 전국의 21개 공공도서관을 2003년 7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조사한 결과 사생활 비밀침해 사실이 드러났으며 국립중앙도서관과 해당 도서관들에게 개인정보인권 보호조치 마련을 권고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마련되었다. 당시 인권위 조사 결과, 상당수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통해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열람실 안에서 CCTV를 설치해 촬영한 자료를 별도 규정 없이 관리·활용하고 있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이에 따른 추가 지침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으며, 공공도서관 사서연수·교육시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에 관한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05년 '개인정보처리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수립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6개

월~3년의 기간 내에서 회원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도록 하였고, 그 기간 이전이라도 회원이 탈퇴를 하면 지우도록 하였다. 둘째, 회원 개인별 도서대출기록 서비스도 임의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회원의 도서대출기록이 개인의 사상, 취향, 가치관을 알리는 중요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카드형태의 회원증 표면상에는 이름, 사진, 회원번호만을 표기하도록 규정하여 회원증 분실 시 개인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회원등록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 CCTV설치와 관련하여 열람실 내에는 회전 및 줌방식의 고성능 기기 설치를 금지하였으며, 디지털자료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모니터링 기능설정을 없애도록 하였다.

그러나 2013년 1월 31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칭을 바꾸고 매우 상세하게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2005년의 방침과 비교하여 그 내용이 확대되고 구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1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및 예방/대응절차, 외부기관 제공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처리를 규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제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지침,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 외부제공 지침 등이다. 그 중에서도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은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파일 등록관리 및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3).

2) 서울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서울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을 포함한 서울시청,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서울시립미술관 등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등을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2011년 11월 21일 제정하여 2012년 4월 4일, 2012년 8월 20일 개정을 거쳐 2013년 4월 15일 재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현재 적용하고 있다.

3) 정독도서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정독도서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독도서관 내에서 이용·관리·처리되고 있는 모든 영상정보에 대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독도서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정독도서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현재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2.2.2 국외사례

1) ALA의 개인정보보호정책

ALA의 '도서관 프라이버시 정책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2003년에 산하위원회인 지적자유위원회(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IFC)에서 제정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이 개개 도서관의 도서관 프라이버시 정책을 개발할 때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샘플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개개 도서관에서 자관의 도서관프라이버시 지침을 개발할 때

참조할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이 지침에서는 다섯 가지의 '공정정보 실행원칙(Fair Information Practice Principles)'을 개개 도서관의 프라이버시지침에 포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ALA의 5가지 표준프라이버시원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김기성(2006)의 논문에 정리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지와 개방원칙으로 이용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기밀에 대한 도서관정책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 선택과 동의원칙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해 한 이용자가 선택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이용자에 의한 접근원칙으로 이용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넷째,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 원칙으로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집행과 구제(보상)의 원칙으로, 도서관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용자가 도서관에 의해 자신의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낀다면, 그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ALA는 도서관의 기밀정책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는 법원명령이나 소환장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시애틀공공도서관

시애틀공공도서관은 'The Seattle Public Library Website: Privacy Notice'라는 명칭으

로 도서관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알리고 있다. 먼저 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시애틀공공도서관은 시애틀공공도서관에 정보를 요구한 사람과 자료를 대출한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웹사이트 및 전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개인이 도서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와 수집되는 내용, 쿠키, 어린이들의 프라이버시, 이용자가 도서관에 기대하는 것과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기대하는 것, 제3자에 대한 것, 외부 사이트, 그리고 보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2.2.3 국내외 가이드라인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서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ALA에서 도서관 프라이버시 정책을 대표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각 관중의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도서관협회(KLA)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각종 도서관에서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프라이버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인 윤리선언' [자료]부분에서는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 조직, 보존하여 자유롭게 이용케하는 최종 책임자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배제한다.'라고 하고, 그 하부조항인 라항에 '도서관인은 이용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3. 국내외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3.1 국내 도서관에서의 불필요한 개인 정보수집

1) 무인좌석발급기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무인좌석발급기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논란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2003년 10월 경기도 시흥시립도서관은 무인좌석발급기를 설치하였다. 이에 열람실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은 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 혹은 관외도서대출카드를 입력해야 했다.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바코드로 입력된 열람증을 도서관 측에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했고, 3회 이상 미 반납시에는 열람실 이용이 금지되었으며 열람실 내에는 다수의 CCTV가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요구와 통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한겨레, 2003).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수의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일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문화관광부는 공공도서관협의회를 통하여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한 공공도서관은 주민등록번호입력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의 경우에도 도서관 열람실의 이용 기회를 제한당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별도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지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다수의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별도 절차를 마련한 도서관들도 이용 사례가 거의 없어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실질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는 무인좌석발급기의 관리자 프로그램을 공공근로요원이 관리하는 도서관도 있고, 일부 도서관 이용자들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다(오마이뉴스, 2005).

2004년에는 공주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무인열람좌석발급기에 도입된 지문인식시스템에 대하여 당시 공주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총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주대학교는 중앙도서관의 이용자 정보시스템과 무인좌석발급기의 프로그램이 연동되어 이용자 정보를 통합·공유되고 있었고, 도서관 관리자가 학생의 개인신상정보와 도서관 대출정보 외에도 열람실 이용정보, 지문정보까지 접근하여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지문인식시스템에 관한 운영규정이나 별도의 관리 지침이 없었으며, 『공주대학교 개인정보보호계획』에도 지문정보의 수집, 저장,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주대학교 측의 행위가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위반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공주대학교의 지문인식시스템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프로메테우스, 2005).

2005년 충남대학교는 위와 같은 사건이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서관에 '지문인식좌석배정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충남대는 먼저 학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한 좌석배정시스템을 도입했으나 한 학생이 여러 개의 좌석을 독점하는 등 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져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문인식시스템으로 대체되었다(연합뉴스, 2005). 지문인식시스템은 이용자 생체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의 거부감은 물론 해킹에 의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CCTV 설치로 인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CCTV에 대한 논란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1999년 우석대학교에서는 반복되는 도서관내 도난사건과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열람실 4곳에 CCTV 20대와 모니터 4대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여학생 성추행과 도서, 개인 소지품 도난 등을 막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누군가 지켜보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연합뉴스, 1999).

2003년 한양대학교에서도 CCTV설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중앙도서관과 각 단과대 도서관에서 크고 작은 분실사건이 잇따르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접수되자 중앙도서관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CCTV설치를 잠정적으로 보류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캠퍼스 절도가 증가하자 총학생회 측은 CCTV 설치를 재추진하기로 결정

하고, 학생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지 6천여 장을 배포했다. 설문조사결과 70% 이상의 학생들이 CCTV설치에 찬성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누군가에게 감시받는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이 보호받지 못한다', '촬영된 자료유출에 대한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반론을 홈페이지에 제시했다(한겨레, 2003).

2005년 연세대학교에서는 각 대학도서관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화재나 도난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는 감시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쪽과 이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이 팽팽했다. 총학생회 측은 잦은 도난사고로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도난 방지용 CCTV 설치를 준비 중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설치 여부 및 장소, 카메라 수 등을 정한 뒤 대학 측에 설치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생들은 '도서관 CCTV가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고 이유를 들어 반발하였다.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인문학부의 한 학생은 열람실 등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습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설치를 반대했다. 같은 학교 공학계의 한 학생 역시 CCTV 설치하는 학생 전체를 잠정적인 범행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각자 도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경비 활동을 강화하면 될 것이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경향신문, 2005).

또한 2005년 부산지역 대학에서도 도서관 등에서의 잦은 도난으로 인한 CCTV설치에 대해 논란이 일어났었다. 부산대학교는 학내 도난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2003년 말부터 제2도서관에 17대, 제1도서관에 3대 등 도서관 2곳에

CCTV 20대를 설치 및 가동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관계자는 CCTV의 설치로 도난사건이 크게 줄었으나 CCTV 설치사실을 몰랐던 일부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5). 이에 CCTV 설치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CCTV 설치에 대한 정확한 공지와 안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2008년 12월 잦은 도난 사건으로 학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전남대학교 도서관은 CCTV 51대를 추가 설치하였다. 도서관 자치위원회는 약 2주 동안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현관에 CCTV 설치의 찬반여부를 조사하였고, 약 97%의 찬성률이 나와 CCTV를 추가 설치하게 되었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사생활 침해'와 '절도 예방' 논란 속에 절도 예방을 선택한 것이다(연합뉴스, 2005; 아시아경제, 2008).

2010년 서울대학교는 사회과학도서관에 CCTV를 11대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서울대에 설치된 CCTV는 총 976개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학생들은 범죄나 도난을 방지할 목적의 CCTV 설치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열람실이나 출입구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므로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찬성 의견과 CCTV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공부하는 모습까지 감시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등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으로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다. 학생들 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행정실 담당자는 예산 처리를 위해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학생회에 CCTV 설치를 제안한 지 한 달여 만에 독자적으로 설치를 결정했다. 2007년 시행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CCTV는 설치에 앞서 구성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구체

적인 CCTV 운영·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지정된 개인정보 관리책임관이 총괄해야 하고, 줌이나 회전 등의 조작도 불가능해야 한다. 현재 도서관 CCTV는 누구나 보고 조작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줌 기능도 갖추고 있었다(시사IN Live, 2010). 그러므로 촬영 내용이 유출되거나 개인정보가 사적으로 사용되어 개인의 사생활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한 21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2004년 7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14개 도서관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이 중 8개 도서관은 열람실 안에까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일부 도서관의 감시카메라는 회전과 줌 기능 등 고도의 성능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공공근로요원이 모니터화면을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CCTV 설치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도서관들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공공도서관도 없었으며, 별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 기관도 없었다. 저장정보의 삭제 기간도 도서관마다 기준이 달랐으며, 감시카메라의 개수도 최소 1개부터 최대 30개까지 다양했고 저장정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 없이 도난 사고 발생 등 필요시 관리자가 임의 열람하거나 경찰관 입회하에 수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도서관의 관장들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CCTV 장비의 회수를 제안하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범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 오마이뉴스, 2005).

한편 도난 및 성추행을 위한 CCTV 설치와 사생활침해에 대한 논란은 여러 관중별 도서관 중 대학도서관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교 및 대학도서관은 도난방지와 개인정보보호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2 국내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유출

1) 개인정보의 무단열람

2008년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은 처음 보는 번호로 걸려온 휴대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호감을 표하며 만남을 요청했다. 당황한 여학생은 곧바로 단호히 거절했지만 이 남자는 그 뒤로도 2주 동안 막무가내로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결국 학생은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그러자 10여 명의 여학생이 동일한 사람에게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러한 사태를 확인하고 총학생회가 진상을 파악한 결과 전화를 건 남자는 대학 학과 자료실에서 대출반납 업무를 맡고 있던 전직 조교임이 밝혀졌다. 이 남자는 학생들이 책을 대출할 때 컴퓨터 모니터에 해당 학생의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가 나타나는 점을 이용하여 마음에 드는 여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

자 지난 2월 대출관련 담당자가 학생 신상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국민일보, 2008).

그 해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한 여학생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 2007년 4월 학생증을 분실했던 그 학생은 얼마 후 모 은행 체크카드와 도서관대출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신형 학생증을 재발급 받았다. 이후 대학 내 은행에서 신형 학생증을 전달받은 당일 오후, 학생증을 발급해줬던 남자 은행원으로부터 휴대전화가 걸려왔다. 이 은행원 역시 학번을 이용해 개인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며 호감을 표시하였고, 노골적으로 만남을 요구했다.

국민일보에서 진행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 관리현황 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대출 담당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조교가 특정 학생의 연락처와 학번, 주소 등의 개인정보에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와 경희대의 경우 대출 데스크에 설치된 듀얼모니터로 대출신청 학생 개인정보를 볼 수 있었다. 이 때 책을 빌리는 학생 측의 모니터에는 연락처, 주소와 같은 중요한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직원용 모니터에서는 상세검색 메뉴를 통하여 학생사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도 대출담당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학생 개인의 신상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정보 유출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박상근(2009)은 면담을 통해 공공도서관에서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 해당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전화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측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연락에 대하여 해당 민원인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민원을 제기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2) 개인정보 무단제공

정현태(2002)는 1998년 9월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당시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그 활동을 규제하고 있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직 활동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 21개 공공도서관장 및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도서관의 열람, 대출, 회원가입 여부 등의 도서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은 한총련 조직원으로 수배자들의 일부가 공공도서관을 자료 이용과 은신처로서 조직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근거로 수사상의 목적을 위해 도서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실제 시내 공공도서관 중 수배자의 주소지 소재일부 공공도서관에서 수배자의 도서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를 위한 잠복근무를 하였다.

경기도의 한 도서관의 경우 경기도 경찰청 산하 모 경찰서에서 한 운동권 학생의 도서대출 과정에 대한 경위를 묻고 관련도서를 압수해 가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도 담당자 및 과장의 결정으로 경찰업무에 협조한 후, 이 사건과 관련한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다른 한 도서관의 경우에도 수사관들이 신분을 밝힌 후, 수사대상 여학생의 대출 기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도서관측은 해당 대출 기록을 출력하여 제공하였다(정현태, 2002).

김기성(2005)도 한 대학교 도서관이 2005년 학내 부서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대출기록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담당자는 도서 대출 기록의 제공은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므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학내 부서 간 업무 협조 차원에서 관리자의 결정으로 해당 자료가 비공식적으로 제공되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자신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한 학생이 이를 항의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자료를 모두 회수하는 사건이 있었다.

3) 개인정보 무단도용

2003년 8월 서울 북부경찰서는 도서관 이용자 정보를 빼내 사이버머니를 만든 뒤 판매한 혐의로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친구 배씨는 서울 관악구 봉천3동 18평 규모의 사무실에 컴퓨터 24대, 자동 사이버머니 생성기 등을 설치한 뒤 거액의 사이버머니를 만들기 위해 대량의 개인 신상정보가 필요하자, 시립도서관 공익요원에게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를 빼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YTN, 2003).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시립도서관에서도 도서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한 사서보조가 도서관 이용자 2만여 명의 인적사항을 공범자에게 전해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이 회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사이버머니를 만들었으며 사이버머니 1조당 현금 1,000원을 받고 되팔아 총 1,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YTN, 2003).

2005년 5월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 대출실에 근무했던 공익근무요원이 다른 학생의 정보를

이용해 약 9개월 동안 총 67권의 책을 불법으로 대출받아 온 사실이 밝혀졌다. 한 휴학생이 지난 4월 학생증 바코드가 손상돼 중앙도서관에 재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연체된 도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그 학생은 학생증을 분실하거나 대여해 준 적이 없었다. 그 휴학생은 함께 공익근무요원 훈련을 받았던 동료가 본교 과학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자신의 이름과 학과, 입학년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동료의 도서대출 내역을 비교해 봤다. 그 결과, 동료의 도서대출 기간이 끝날 때를 맞춰 일련번호가 동일한 도서가 그 휴학생의 이름으로 대출된 것을 발견했다. 그 공익근무요원은 지난해 7월부터 과학도서관 대출실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동료 직원에게 부탁해 직원 ID를 만들었다. 그 공익근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에게는 발급되지 않는 직원 ID를 쓰고 있는 것을 본 다른 직원은 그의 ID를 삭제하고 자신의 ID로 그 공익요원에게 책을 대신 빌려줬다. 그는 직원 ID로 로그인해 학생 이름을 입력하면 학과와 학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공익근무요원 훈련을 받았던 휴학생 동료의 학번을 알아낼 수 있었다. 공익근무요원은 그 직원의 ID로 도서를 대출하고 도서대출 기간이 끝나면 그 휴학생의 이름으로 같은 도서를 다시 대출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67권의 도서를 대출받았다. 지난 6일 공익근무요원 동료를 고소한 그 휴학생은 도서관에 입력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대신문, 2006).

4) 문서 파쇄과정에서의 개인정보유출

2010년 9월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에서 학

생과 교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이면지가 도서관 도서검색대에 비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 도서관 단행본실과 로비에 비치된 이면지는 책의 분류번호와 열람실 좌석 번호를 메모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과학도서관에서 발견된 이면지 뒷면에는 책을 대출했던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 대출도서 등이 적혀 있었다. 심지어 중앙도서관에는 도서관 측의 자료로 추정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적힌 종이도 있었다. 도서관 이용자인 한 생명대학 학생은 자신의 이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써있는 것을 좋아할 이는 없으며, 학교가 개인정보보호를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수의 이름과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종이도 있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던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부 측은 이면지 분리 작업 시 생긴 실수라고 했다(고대신문, 2010).

5) 전자도서관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전자도서관시스템이 해킹 당해 전국 초·중·고 학생 63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발표에 따르면 IT 업체에 종사하는 4명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5월말까지 교육청 전자도서관시스템 서버를 점검하던 중 정보를 유출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15개 시도교육청에 있는 전국 초·중·고 학생 636만 명의 정보를 빼내어 독서통장 프로그램 사업자들에게 2억 원을 받고 학생들의 이름과 학년, 반, 나이, 주소 등의 인적사항과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연락처와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이 전자도서

관 프로그램에는 10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서버를 유지·보수할 때는 서버 관리 업체의 요청에 따라 잠시 이 방화벽을 해제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전자도서관 직원들이 매번 절차에 따라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 기한이 지나도 방화벽을 열어 두거나 보안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IT업체 종사자 4명은 쉽게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경찰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보관하면서, 보안에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보들이 재해킹당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YTN, 2010).

3.3 국외 도서관 개인정보 유출사례

1) 미국

1956년 뉴욕경찰서는 폭탄제조자를 밝혀내기 위해 뉴욕공공도서관에서 폭탄과 관련된 책을 대출한 사람들의 이름을 수집하였으나 범인은 잡지 못했다. 이 사건은 사서로 하여금 도서관 이용자의 기밀성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 사건이었다.

이후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미수사건이 일어났을 때 콜로라도 공공도서관은 FBI로부터 범인의 대출기록 공개를 요구받았다(Weiner, 1997). 이후 다시 1987년 콜롬비아의 Math/Science Library에 FBI가 방문하여 외국인 이용자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후에 도서관 인지 프로그램(Library Awareness Program)이라 밝혀졌는데, 이 프로그램은 FBI가 특정 도서관 이용자의 관심주제와 대출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도서관을 방문한 것으로 독점적

이고 민감한 정보를 훔치기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외국 이방인, 특히 소련의 첩보 활동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Molz, 1990).

2005년 6월 21일, ALA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정부가 도서관에 요구한 대출 관련 자료가 600여 건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는 대출정보 요구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미 하원은 16일 사법당국이 도서관 대출 자료를 조사하는데 테러방지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동아일보, 2005). 2001년 10월 미 의회를 통과한 「애국법」 제215조는 ‘정부기관은 테러 방지 목적으로 도서관에서 누가 어떤 책을 대출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LA는 2001년 10월부터 2005년 4월까지 회원 도서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공식·비공식 대출 자료 요구가 609건에 달했다고 발표하며 ‘정부기관들이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라덴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이거나 호의적인 도서를 대출한 사람들의 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는 헌법에 명시한 개인의 정보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센 반발에 미 법무부는 ‘정부의 도서관 자료 요구는 「애국법」 제정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부 도서관들은 ‘당신의 대출기록이 FBI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붙이고 인터넷 사용자 명단을 자동 삭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동아일보, 2005).

2) 영국

영국 데일리메일(Daily Mail)은 2007년 4월

초·중등학생 590만 명의 지문을 찍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인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학생들은 이제 도서관의 책을 빌리고, 학교 식당에서 급식을 먹으려면 지문 같은 생체정보를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

야당 보수당이 정보자유법에 따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1개 교육청 중 39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교육청이 학생들의 지문 채취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만 7천개 학교, 최대 590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지문 정보가 학교에 수집되는 것이다.

이미 초·중등학교 아동 100만 명의 지문이 채취돼 학교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천 5백개가 넘는 학교에서 도서대출증 카드 대신 학생의 엄지손가락을 스캔함으로써 책을 빌려주는 지문인식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 몰래 학생들의 지문을 채취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지문인식시스템을 가동하는 학교들은 나쁜 의도를 갖고 지문을 채취하는 게 아니며,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이 지문정보를 파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아이들이 감시사회를 받아들이게 유도하는 '회유' 훈련의 일환이라며 해커가 학교 컴퓨터에 침투해 학생들의 신상정보를 훔쳐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생체정보 신분증 반대 운동을 펴는 필 부스는 이것은 '도덕적 의무의 폐기'라며 결국 정부가 뒷문으로 엄청난 양의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2007).

3) 일본

정현태(2000)는 일본에서 1995년 3월 28일

에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사건과 관련하여 국립 국회도서관에 도서관 이용기록을 요구하는 경찰청 수사관의 방문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상 필요기록에 대한 조회서를 갖고 방문한 수사관에 대하여, 도서관측은 헌법의 개인 사생활권과 국회직원법의 비밀수호 의무,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선언 등의 이유를 들어 협력을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다음 달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정식으로 발부 받아 1994년 1월 5일부터 1995년 2월 28일까지 이용신청서 53만 건, 자료청구표 75만 건, 복사신청서 30만 건 등을 압수해 갔다. 같은 해 5월 경찰청은 2차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방문하여 1993년 12월 2일의 자료청구표 5장과 복사신청서 2장을 추가로 압수해 갔다. 도서관측은 경찰청에서 2차례에 걸쳐 압수해 간 이용기록 중 이용신청서 3장과 복사신청서 7장을 제외한 모든 기록을 6월에서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사건을 마무리한 도서관측은 이용자 기록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건의 경위를 밝힌 보고문을 작성하여 관내에 게시하고 이용자들에게 양해를 구하였다. 이후 일본도서관협회 내 '도서관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의 관동지구 소위원회에서는 다른 도서관에게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서관 이용기록에 대한 법적인 대응의 방법으로 몇 가지 요령을 제시하였다(정현태, 2000). 첫째,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기재요건, 압수물품, 피의자명, 죄명 등에 대한 정확한 명시와 수사상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상황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둘째, 모든 이용기록에 대한 무작위적 압수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

의를 신청할 수 있는 준항고의 절차가 있으며, 셋째,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의 증언거부권 혹은 압수거부권과 같이 개인비밀에 대한 도서관 이용기록의 특수성이 사법적 비교형량의 원칙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는 점과, 넷째, 우편물, 전화통신 등에서 개인의 사생활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도서관 이용기록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정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기록과 관련한 사법적 요구가 발생한다면 위와 같은 요령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4년 10월, 일본의 미에현립도서관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NEC 자회사의 직원이 대출 기록 등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도서관 이용자 13만 명의 데이터를 도서관에서 무단으로 노트북에 다운로드하여 관외에 반출하였고 그 노트북을 도난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柘植書房新社, 1998).

3.4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

1) 강제력의 강화 필요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하여 인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와 환경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국가공공기관으로서 언론에 활동이 노출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어디까지나 '권고 조치'를 내릴 뿐이지 이에 대해 확고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권고 조치가 내려진 기관은 시정 사항을 수행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의 관심이 줄어들면

언제든지 동일하거나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7조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권고 조치'로 밖에 강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폐지시킨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진다. 또한 밀려드는 민원에 비해 인력이 모자란 상황이라 사후 조치는 물론, 사건의 처리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개인정보관리자의 인식개선 필요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CCTV 설치에 대한 권고 사항으로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이에 관한 자체 규정이나 운영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 '가능한 한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 이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방안이라는 인권단체의 반발을 받았다. CCTV 운영방안 역시 일정한 법제적 장치가 존재한다면 CCTV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여져 비판을 받았다.

현재, 2014년 8월에 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으로 정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는 반복되는 대형 개인신상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사항이며, 관리자로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보면 대

부분이 대출반납을 담당하는 위치에서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출반납업무는 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업무 중 단순노동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도서관 외부 사람이 단기간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서관은 이에 대하여 정보열람이 가능한 등급을 높여 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관련 문서는 사용 후 즉시 완전 폐기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3) 도난사건에 대한 해결책 모색 필요

도서관이 CCTV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일비재한 도서관 내 도난사건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도난된 물건을 찾는 데 필수적인 것은 목격정보인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 내 설치된 CCTV이기 때문이다. 도서관 역시 과도한 시민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협성을 인지하면서도 CCTV 설치를 진행하는 것은 도난에 대한 민원의 해결과 조금이라도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다는 이용자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CCTV를 설치한 도서관은 수치상으로 도난 범죄 발생률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CCTV를 관내에 두는 것이 도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사서 및 도서관 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4.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4.1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배경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11년 3월 제정되어 그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되어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정보보호의 범위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手記)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
-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③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 ④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의 원칙적 처리 금지, 고유식별정보 외의 방법으로 개인을 식별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처리제한 강화
- ⑤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제한 근거 마련
- ⑥ 개인정보영향평가 제도 도입
- ⑦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
- ⑧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 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

분쟁조정제도 도입

- ⑩ 단체소송의 도입
- ⑪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당할 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침해사실을 신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시행함에 따라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2014년 8월 7일부터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부록 1: 개인정보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참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시 세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2)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의 요구를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기타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16.8.6까지) 반드시 과기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제34조제2항)이다. 이에 따라 주민

등록번호의 유출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셋째,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제65조제3항)이다. 법규 위반행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의 징계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 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하였다.

2)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필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금지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기본원칙]

-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유지
-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근거 마련 지원요청
 - * (민간사업자/협회) 해당 업종 소관부처에 법령 근거 마련 지원요청
 - * (소관부처) 타당성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전환
 - * 출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2014)

즉,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위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상 주민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령 조문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구·허용하는 경우, 법정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는 경우, 법령

조문 또는 서식상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 (주민등록증·초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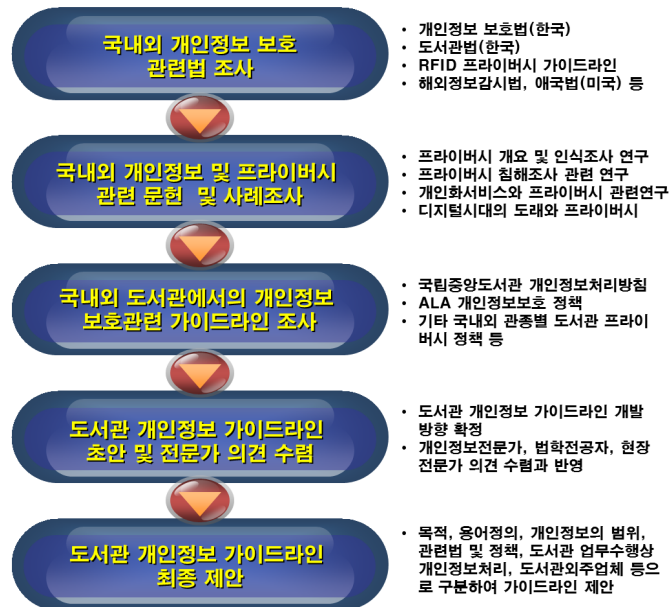
또한, 법령상 근거는 없으나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필요성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번호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는 파기하여야 한다. 즉, 회원 DB관리에서 유일키로 활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2 개발절차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현장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프

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 및 사례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국내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개발 사례조사 및 분석, 국내외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조사 및 분석,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법 조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에 근거해서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 가이드라인은 현장 사서에게 이용자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유의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절차

4.3 전문가 의견 수렴 내용 및 반영결과

본 연구는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도서관사서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한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사서 및 법률전문가 등 7명을 대상으로 우편 혹은 e-mail 등을 통해 자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자문의 범위는 '도서관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제안'이었고, 특히 국내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자문을 의뢰하였으며 의견을 수렴하였다(〈표 1〉 참조).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가이드라인 본문 부분과 가이드라인 개발 개요에 관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의 자문결과를 조항별로 제시하면서 자문의견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결정하였다.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경우에는 실제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을 수정하였다.

1) 가이드라인 개발 개요 부분에 대한 의견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 개요 부분에

대한 의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도서관 개인정보관리 방향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는 신규 이용자 등록에 관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개인정보 및 ID를 직접 작성, 신분증에 의한 대면 확인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 신분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견 제시가 합당하였고 따라서 제안한 대로 원래의 문장을 수정 보완 하였다(〈표 2〉 참조).

2) 제1조(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목적)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안) 자문분석 결과 중 먼저 제1조(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목적)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는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이용자에게 공표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는 규정이고, 의료·약국·사회복지·금융 등 각 분야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설명문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에 대

〈표 1〉 전문가 자문 설계 및 분석내용

항목	분석내용
자문대상	• 공공도서관 관장 및 사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법률 전문가 등 총 7명
자문 대상자 연락처 확보	• 자문 대상자로 공공도서관 관장 및 사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법률인 선정 • 자문 대상자의 연락처(전화, e-mail) 정보 확보 • 개별적으로 전화를 통해 자문요청 및 약 30%로부터 자문수락
자문의견 수렴	•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기반 심층 의견 수렴 • 자문 방법: 우편 혹은 e-mail 방법, 전화, 오프라인으로 면담수행
자문 기간	• 2014년 10월 1일~10월 31일

〈표 2〉 신규 이용자 등록에 대한 의견 및 반영결과

원래문장	'신규 이용자 등록 시 이용자 본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분증으로 대면확인 하여야 한다. 후에 이용자가 ID부여 및 부가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	↓
문제사항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면으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정보주체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원가입신청서를 받아서 개인정보처리자가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직접 pc로 입력하는 것만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회원가입대상이 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PC를 통해 직접 입력하게 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된다.
↓	↓
수정보완 할 것으로 제안된 문장	'신규 이용자 등록 시 이용자 본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및 ID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분증으로 대면확인 하여야 한다.'
↓	↓
제시문장으로 수정결정	원 문장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제시한 문장대로 수정하기로 결정

해서 제1조의 설명문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 등 개인정보의 활용함에 따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다.

3) 제2조(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근거)

제2조(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근거)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관계되는 법 및 정책의 출처를 명시할 때 현재의 정부부처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수정하였다.

둘째, 명시되어 있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관계되는 법 및 정책 중 관련이 없는 것이 있으며 수정하여야 하는 지침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 의견에 대하여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삭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노출 방지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방지 가이드라인'으로 수정하였다.

4)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취급자'의 정의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로서 공공기관에서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에 대하여, 기존에 적혀진 '표준 개

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의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정의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취급자’ 정의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2항의 “처리”의 정의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외에도 연계와 연동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2조제2항 확인결과, ‘연계’와 ‘연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반영하지 않았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추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추가하였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공공도서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다.

5)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으로, 개인정보의 특성상 가이드라인에서 유형을 일일이 나열하기 곤란하여 일반적으로 표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 대한 표를 삭제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범위표의 경우에는 도서관 내에서 가이드라인 적용 시 참고 가능한 예시로 삭제하지 않고 그 적용범위를 명시하였다.

6) 제2장(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유)
제2장(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유)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전, 후의 조항과 중복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제2장의 이름을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유’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항목, 보유기간’, ‘홈페이지 이용 시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을 삭제하였다. 또한 수정한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유’에 맞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항목·수집목적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를 받는 방법’ 항목을 추가하였다.

7)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항목, 보유기간)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항1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1호에 서비스 제공의 내용을 추가하며, 제2호 민원처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제1호에 서비스 제공의 내용으로 ‘열람콘텐츠 제공, 본인 인증, 문화강좌 수료증 등의 증명서 발급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를 추가하였으며, 제1항제2호에 민원처리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 제1항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한다.’와 제1항 제1호의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에 대해 구체적인 목적을 실시하는 것이 아

나라면 1호를 1항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에 대해 제1항과 제1호의 내용이 겹치고,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8) 제9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9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서 이용자(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를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누고, 제시되어 있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항목을 제1호에서 제9호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두 명의 자문위원에게 나온 의견으로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항목이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므로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항목을 호로 수정하였다.

둘째, 제7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내용이 중복이 되므로 제9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와 내용을 합쳐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하나의 조항이 되게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에 대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보다는 포괄적인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하여 제3자에게의 개인정보 제공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수정에의 정보주체 등의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9) 제4장(정보주체의 권리)

제4장(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의견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정보주체의 권리'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으로 수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정보주체의 권리'보다는 전체적인 조항내용을 보았을 때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더 적절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이 앞조항과 중복되며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 조항으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이를 제12조(정보주체의 권리 보장)로 하여 수정하였다.

10) 제15조(권익침해 구제방법)·제16조(개인정보 침해신고)

제15조와 제16조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5조(권익침해 구제방법)과 제16조(개인정보 침해신고) 두 조항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조항을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피해구제'로 수정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에 대하여 제15조와 제16조는 '개인정보 침해신고 및 피해구제'로 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분쟁 해결이나 상담, 권익침해 구제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개인정보 유출 통지, 1만 건 이상 유출시 대응방법, 개인정보 통지 방법, 피해의 최소화 및 필요 조치 강구, 유출 사실 게시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위원회 등의

주소와 연락처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침해신고센터와 위원회 등의 주소와 연락처를 명시해 개인정보 침해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삭제하지 않고, '해당기관 방문 및 웹사이트를 통한 접수 후, 침해여부를 조사하여'를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침해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한 후'로 수정을 하였다.

11)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대하여,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는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의 내용과는 상이하므로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대한 항목이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포함되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12) 제21조(대출기록)

제21조(대출기록)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3항 제1호의 '대출기록은 반납과 동시에 삭제하며, 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요금 완납되자마자 삭제한다.'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의견에 대해 제3항과 제3항제1호의 내용이 겹치지 않고, 현장사서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본 가이드라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제3항 제4호의 개인정보의 파기방법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제3항제4호의 내용이 파기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3항제4호의 내용을 삭제하였다.

13) 제26조(도서관컴퓨터와 데이터관리)

제26조(도서관컴퓨터와 데이터관리)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사이트 통제 소프트웨어 설치 불가 내용은 국정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4조(인터넷 PC보안관리)와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등의 보안지침에 의거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 등에 의해 많은 도서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바 관련 내용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제5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 반영하지 않았다.

「전자정부법」 제56조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유통할 때 위조·변조·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제1항은 제26조에 대한 설명문으로 대체하였으며, 제2항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포괄하는 항목이므로 그대로 두었다.

14) 제27조(RFID서비스 관리)

제27조(RFID서비스 관리)에 대한 의견으로 대출카드 적용불가와 태그에 입력되는 항목의 최소한의 유지를 통한 이용자정보(회원번호와

이름정도)만 수록된다면 대출회원용 카드로의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최소한의 정보만 유지한다면 RFID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생각된다. RFID는 도입 자체만으로 많은 편의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표 3〉 참조).

〈표 3〉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자문분석 및 반영결과

항목	자문내용 및 반영결과
제1조	•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설명문 수정
제2조	•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관계되는 법 및 정책의 출처를 현재의 정부부처로 수정 • 명시되어 있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과 관계되는 법 및 정책 중 관련이 없는 것이 있으며 수정하여야 하는 지침 존재
제3조	• 개인정보취급자 내용 수정 • 2항 “처리”에 연계, 연동 추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추가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내용 삭제
제4조	• 개인정보의 특성상 가이드라인에서 유형을 일일이 나열하기 곤란하여 일반적으로 표로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 대한 표 삭제
제5조	• 제5조 1항에 1호, 2호 추가(서비스의 제공과 민원처리 내용) • 5조 1항 1호의 내용이 구체적인 목적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호를 1항으로 변경
제9조	• 1항과 2항으로 앞의 문장을 나누고, 아래 1~9항까지를 호로 수정 • 1~9항까지를 호로 수정 • 제7조와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제7조와 제9조가 하나의 조항이 되도록 내용 수정
제15조 및 제16조	• 제15조와 제16조의 내용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항이 되도록 내용 수정 •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대응’에 대한 항목 추가 • 개인정보 침해신고(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주소 등 삭제
제19조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 제5장의 내용과는 상이하므로 삭제
제21조	• 대출기록은 반납과 동시에 삭제한다는 조항 삭제 • 제3항제4호 내용 삭제
제23조	• 1항을 그냥 설명문장으로, 1~3호를 항으로 수정
제26조 (도서관컴퓨터와 데이터관리)	• 불법 사이트 통제 소프트웨어 설치 불가 내용은 국정원의 <국가정보안기본지침> 제34조(인터넷 PC보안관리)와 안전행정부의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등의 보안지침에 의거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 등에 의해 많은 도서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바 관련 내용을 비교 • 제26조1항, 2항 삭제
제27조 (RFID서비스 관리)	• 대출카드 적용불가와 태그에 입력되는 항목의 최소한의 유지를 통한 이용자정보(회원번호와 이름정도)만 수록된다면 대출회원용 카드로의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검토

4.4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안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서들이 어

떠한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헌분석, 사례분석, 전문가 심층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은 <표 4>와 같다.

<표 4>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구분	포함 내용
목적	프라이버시 권리
	도서관인의 윤리의식 및 사명감
	가이드라인 개발 목적 및 적용효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용어정의	개인정보
	처리
	정보주체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식별정도
	민감정도(개인정보 등급)
관련법 및 정책	「개인정보 보호법」
	「도서관법」
	「도서관인 윤리선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반적인 내용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노출 방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유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이용자정보의 적극적 보호방침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대출기록
	온라인탐색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및 원문서비스
	참고서비스 기록

구분	포함 내용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소셜서비스 기록
	도서관컴퓨터와 데이터 관리
	RFID와 프라이버시
	도서관자동화 기기
	CCTV설치 및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도서관외주업체	개인정보의 타인위탁 운영방침
	도서관 서비스 아웃소싱업체에 대한 관리

5. 논의 및 향후연구제안

5.1 논의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되, 관중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적용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개 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개발 목적 및 활용 방향은 도서관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대처방향 마련,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법령을 도서관에 반영,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도서관 개인정보관리 방향 마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도서관 이용자 동의 획득: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이행 사항으로서, 미동의 이용자 정보는 처리·활용이 불가하며, 2년 내(~'16.8.7) 파기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웹 페이지에 제공하고 이에 대해 이용자 동의에 대한 필요성을 안내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이용자의 동의를 위해 이용자 신분증으로 대면확인 후, 이용자 정보를 조회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받은 후 대출/반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신규 이용자 등록 시 이용자 본인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및 ID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분증으로 대면확인 하여야 한다.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파기: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설정된 회원ID는 현행법상 보유 및 활용이 불가하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파기해야 한다. 도서관은 주민등록번호로 설정된 회원ID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 이용자가 ID를 변경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의 대처방향 마련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도서관은 「개

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개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표한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각 도서관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도서관이 수집·관리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CCTV 등 인권관련 장비운 용, 이용자 규정, 사서연수교육 등 인권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 한 각 부서별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함 이다.

3)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도서관 최적화

안정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주민등록 번호 수집금지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현황 및 개선 방향,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구체 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도서관의 상황을 반영하 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도서관의 상황에 맞는 도서관 개인정 보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통해, 도서관 이용자 개인정보 취급방침, 기본원칙, 판단기준, 개인 정보 수집·처리 체크리스트, 개선절차, 상황별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노영희, 2012b; 2012c).

예를 들어, 도서관 이용자의 일반적인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도서관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대출기록, 온라인탐색기록, 상호대차서비스 및 원문서비스기록, 참고서비스기록, 소셜서비스 기록, 도서관컴퓨터와 데이터관리, RFID서비 스기록, 도서관자동화기기기록, CCTV기록 등 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도서관 개인정 보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함으로써 사서에게 구체적인 지침 을 제시해 줄 수 있다.

4) 관련법령에의 반영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서관법』을 개정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향상시키는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전국의 공공도 서관 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계획 수립 등 이용 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도울 수 있는 기본이 될 것이다.

5)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조사에 따르면, 국내 도서관들이 사용하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용어 및 지침내 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노영희, 2012a). 용어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 호방침, 개인정보보호정책,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으로 다양하고, 사용되는 항목 또한 도서관마 다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도서관에서 표준화된 도서관 개 인정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거나 자 관의 특성에 맞춰 적용 한다면, 도서관 개인정 보 가이드라인의 표준화 유도는 물론 현장의 애 로사항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 향후연구제안

IFLA/FAIFE(2006)에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첫째, 사서는 도서관내의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그들의 정보탐색 행위를 존중하여야 한다. 둘째, 사서는 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용자의 인터넷 기록을 유지해서는 안 되며, 법이 요구하는 기간 이상으로 그러한 기록을 보관해서도 안 되며, 최적의 완전한 기록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이러한 정신을 기반으로 지침을 개발하고 준수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으로써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진정한 지적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1) 관중별 도서관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분석과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ALA는 도서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있으며, 주별로 도서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더 나아가 개개 도서관이 자관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ALA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사서들이 직접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기반으로 프라이버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Struges, 2002; Enright, 2001; Fifarek, 2002).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한·두줄 정도로 간단하게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 다양한 상황에 사서가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나 법집행 기관에 대한 대응책, 모기관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을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서 제시하여야 한다.

2) 취약계층의 프라이버시의 침해 고려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고려할 때 소외계층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생각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소외계층으로 외국인과 장애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들 수 있다. 「Patriot Act」에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논란은 많은데, 그 중에서 외국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논란이 된 것은 유학생 등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의 요구로 인한 사생활 침해였다. 미국 정부는 동법을 시행하면서 FBI에서는 외국인 학생과 교직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시민권 관련 정보, 출생지, 출생연도 등 추가 정보를 요구했다. 또한 과도한 사생활 및 독서의 자유 침해문제로서, 동법에 따르면 FBI와 사법당국은 테러수사를 위해서 도서관 책의 대출자, 대출도서명 및 책의 구입자, 도서관 인터넷 접속자, 검색자료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성호, 2003). 이로 인해 외국인의 개인 신분 정보는 물론 그들의 도서관 활동까지 모두 정부기관에 노출되게 된다. 도서관은 신분에 관계없이 지적자유를 보장해 주는 기관으로서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서관에서의 장애인의 프라이버시는 이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

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일반인에 비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읽는 모든 책을 사서에게 의지해야 하며, 도서관의 모든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사서를 포함한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과거에 시각장애인은 사서나 주변사람이 편지, 은행계좌정보, 청구서, 약국정보 등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했다(Falk, 2004).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까지 생각하기는 힘들었다. 이후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엄청나게 향상되었다. 시각장애인에게 휴대전화가 주변 상황을 모두 말해 주고 길을 안내해주며, 목적지를 검색해서 안내해 준다. 그 외에도 텍스트인식 소프트웨어, 음성인식, 점자키보드와 같은 수없이 많은 서비스 향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장애인도 독자적으로 인터넷에 접근하고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는 더 심각해 졌을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요구된다.

3) 관중별사서의 인식조사 및 교육 필요

공공도서관 사서뿐만이 아니라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그리고 전문도서관 등 여러 관종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관련 인식조사를 수행하고 각각의 관중에 대한 대처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관중에 따라 다루고 있는 이용자 정보와 이용자 대상 서비스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Kim & Noh, 2014). 또한 사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체계적인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 교육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노영희, 김

태경, 김동석, 2015). 또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은 반드시 사서들의 정규 재교육프로그램으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4)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FAQ 개발 필요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 사례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를 조사하였고 또한 자문과정을 거쳐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을 검증 받았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고 어떤 경우에 침해가 안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여부를 알려주는 FAQ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공공도서관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안으로서 제안하되, 국립중앙도서관을 대상으로 삼아 제안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관종을 구분하지 않고 어느 도서관에서나 적용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개 도서관은 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하여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조사, 국내외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관련문헌 및 사례조사, 국내외 도서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조사,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작성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그리고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최종 제안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쳐 개발된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크게 목적, 용어정의, 개인정보의 범위, 관련법 및 정책, 일반적인 내용, 도서관의 업무수행상 개인정보처리, 도서관

의 외주업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의 개발 목적 및 활용방향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도서관의 대처방향 마련,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도서관 최적화, 관련법령에의 반영, 도서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표준화 지향 등이다.

참 고 문 헌

- 장서희 (2005. 8. 30). 지문인식으로 도서관 출입은 인권침해. 프로메테우스. Retrieved from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50830/20050830133900.html>
- 강순희 (2003). 사서 및 정보서비스직의 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시민과도서관, 4(4), 20-59.
- 강정규 (2010. 9. 29). 교과부 서버 해킹... 학생 636만 명 개인정보 유출. YTN 뉴스. Retrieved from http://www.ytn.co.kr/search/search_view.php?s_mcd=0103&key=201009291916375866
- 국가인권위원회 (2007).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분야 (제2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립중앙도서관 (2013).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개인정보처리방침. Retrieved from http://www.nl.go.kr/nl/c6/page1_1.jsp
- 김기성 (2006). 대학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수진 (2005. 5. 9). 도서관 개인정보도용 사고 발생. 고대신문. Retrieved from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7>
- 김진형 (2007. 4. 9). 英 학생 지문 채취로 '빅 브라더' 논란 확산.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600984>
- 김현수 (2008. 11. 19). 전남대 도서관 CCTV '빼곡'. 아시아경제. Retrieved from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111817002581948>
- 김혜경, 남태우 (2004). 한국의 사서직 윤리규정 방향 제언. 정보관리학회지, 21(4), 329-352.
- 김혜선 (1994). 사서직 윤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희중 (2003. 11. 11). 시립도서관 좌석발급기 개인정보 유출우려 높아.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031732>

- 노영희 (2012a). 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207-242.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207>
- 노영희 (2012b). 도서관의 이용자맞춤형서비스와 프라이버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3), 353-384.
- 노영희 (2012c). 디지털도서관서비스기록과 이용자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3), 187-214. <http://dx.doi.org/10.3743/KOSIM.2012.29.3.187>
- 노영희 (2013). 도서관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서인식 조사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73-96.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073>
- 노영희, 김태경, 김동석 (2015). 도서관이용자프라이버시에 대한 교육전후의 이용자인식변화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4), 63-84.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1.063>
- 노용택 (2008. 3. 24). 대학서 학생 정보가 줄줄... 대부분 대학 유출 위험성조차 파악 못 해. 국민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308594> [인용 2014. 9. 17].
- 박상근 (2010). 공공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강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전공.
- 서현수 (2005. 5. 9). 지금 보는 모니터 화면, 누군가 보고 있다. 오마이뉴스.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63365>
- 손연옥 (1996). 도서관 업무와 전문사서간의 윤리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도서관학논집, 24, 485-517.
- 송세혁 (2003. 8. 27). 고객 개인정보 빼낸 공익요원 등 3명 영장. YTN 뉴스.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0043528>
- 오수희 (2005. 4. 6). 부산대학가 도서관 'CCTV' 설치 논란.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65890>
- 윤다솔 (2010. 9. 27). 개인정보 적혀 있는 이면지 보셨나요? 고대신문. Retrieved from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89>
- 윤석이 (2005. 9. 9). 충남대도서관, 지문정보요구 인권침해 논란.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094807>
- 이현정 (2010. 5. 15). 서울대는 CCTV 공화국. 시사inLive. Retrieved from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8>
- 임진택, 김양우 (2015). 공공도서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1(4),

- 85-108. <http://dx.doi.org/10.3743/KOSIM.2015.32.1.085>
- 정미경 (2005. 6. 23). 美 도서관 이용 감시당하고 있다... 시민단체등 반발. dongA. Retrieved from <http://news.donga.com/3/all/20050623/8202825/1>
- 정현태 (2000).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243-264.
- 제성호 (2003). 미국의 반테러법과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 중앙법학, 5(3), 129-162.
- 최명애, 장관순 (2005. 4. 4). '대학 도서관 CCTV' 범죄방지냐, 인권침해냐.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4040711211&code=940202
- 홍인철 (1999. 5. 31). <현장>성추행 막기위해 대학 도서관에 CCTV 설치.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504235>
- 山本健治 (1998). 『プライバシー侵害—保護法で私たちは守られるか』. 柘植書房新社.
- Enright, K. P. (2001). Privacy audit checklist. Retrieved from <http://cyber.law.harvard.edu/ecommerce/privacyaudit.html>
- Falk, H. (2004). Privacy in libraries. The Electronic Library, 22(3), 281-284.
- Fifarek, A. (2002). Technology and Privacy in the Academic Library. Online Information Review, 26(6), 366-374.
- IFLA/FAIFE (2006). IFLA/UNESCO Internet Manifesto Guidelines. Retrieved from <http://www.ifla.org/files/faife/publications/policy-documents/internet-manifesto-guidelines-en.pdf>
- Intellectual Freedom Committe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2). Questions and Answers o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Retrieved from <http://www.ala.org/Template.cfm?Section=interpretations&Template=/ContentManagement/ContentDisplay.cfm&ContentID=15347>
- Kim, Dong-Seok, & Noh, Younghee (2014). A study of public library patrons' understanding of library records and data privacy.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4(1), 53-78.
- Molz, R. K. (1990). Censorship: Current issues in American libraries. Library Trends, 39(1/2), 18-35.
- Noh, Younghee (2014). Digital library user privacy: Changing librarian viewpoints through education. Library Hi Tech, 32(2), 300-317.
- Seattle Public Library. The Seattle Public Library website: Privacy notice. Retrieved from <http://www.spl.org/privacy/the-seattle-public-library-website-privacy-notice>

- Sturges, P. (2002). Remember the human: The first rule of netiquette, librarians and the Internet. *Online Information Review*, 26(3), 209-216.
- Sturges, P., Teng, V., & Iliffe, U. (2001). User privacy in the digital library environment: A matter of concern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Library Management*, 22(8-9), 364-370.
- Tripathi, Sneha, & Aditya Tripathi (2010). Privacy in libraries: The perspective from India. *Library Review*, 59(8), 615-623.
- Weiner, R. G. (1997). Privacy and Librarians: An Overview. *Texas Library Journal*, 73, 1.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i, Myeongae, & Chang, Gwansun (2005, April 4). 'University library CCTV', crime prevention, o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Kyunghyang Shinmun*. Retrieved fr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504040711211&code=940202
- Hong, Inchul (1999, May 31). <Spot> CCTV installed in the university library in order to prevent sexual harassment. *Yonhap news*.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504235>
- Je, Seong-Ho (2003). The U.S. Antiterrorism Act and its Lessons For Korea. *Chung-Ang Law Review*, 5(3), 129-162.
- Joung, Hyun-Tea (2000). A study on the intellectual freedom in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1), 243-264.
- Jung, Mikyung (2005, June 23). US libraries are being watched, civil society backlash. *DongA*. Retrieved from <http://news.donga.com/3/all/20050623/8202825/>
- Kang, Jeonggyu (2010, September 29). MEST server being hacked... 6.36 million students' private information come spills. *YTN News*. Retrieved from http://www.ytn.co.kr/search/search_view.php?s_mcd=0103&key=201009291916375866
- Kang, Seohee (2005, August 30). Fingerprint library access is a human rights violations. *Prometheus*. Retrieved from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50830/20050830133900.html>
- Kang, Sun-Hui (2003). A study on ethic of librarians and information service job. *Library with People*, 4(4), 20-59.

- Kim, Hae-Kyoung, & Nam, Tae-Woo (2004). A new model for codes of ethics for librarians of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1(4), 329-352.
- Kim, Huijung (2003, November 11). City library seating issuer, possibility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s high. *Hankyoreh*.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031732>
- Kim, Hye-Sun (1994). A study on ethics in librarianship.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Kim, Hyunsoo (2008, November 19).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s full of CCTV. *Asiae*. Retrieved from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8111817002581948>
- Kim, Jinhyung (2007, April 9). England, students due to fingerprinting, Big Brother controversy come diffusion. *Yonhap news*.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600984>
- Kim, Ki-Seong (2006). A study on privacy policy of university libraries. M. A.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Sujin (2005, May 9). Library ID theft incident. *Korea University News*. Retrieved from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5857>
- Lee, Hyunjung (2010, May 15).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CCTV republic. *SisainLive*. Retrieved from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8>
- Lim, Jin Taek, & Kim, Yang-woo (2015).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t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85-108.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07).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collection: Human rights policy area*. 2rd ed. Seoul: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Noh, Yongtaek (2008). University student information is slipping away, most university can not even grasp a leakage risk. *Kukmin Daily*.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308594>
- Noh, Younghee (2012a). A study on developing and proposing the library privacy policy. *Journal*

-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207-242.
- Noh, Younghee (2012b). A study of personalized user services and privacy in the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3), 353-384.
- Noh, Younghee (2012c). A study of digital library service records and user priv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187-214.
- Noh, Younghee (2013). A study on librarians' perception of library user priv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73-96.
- Noh, Younghee, Kim, Tae-Kyung, & Kim, Dong-Seok (2015). Investigating change of users' perception of privacy pre-and post-education on library user privac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63-84.
- Oh, Soohee (2005, April 6). Pusan's universities libraries, CCTV installation debate. *Yonhap news*.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965890>
- Park, Sang-Keun (2010). A study on the plans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in public librarie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Korea.
- Seo, Hyunsoo (2005, May 9). The monitor screen you are seeing now, someone is watching. *OhmyNew*.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0063365>
- Sohn, Yeon-Ok (1996). A study on the professional ethical relationship between librarian and library work.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4, 485-517.
- Song, Sehyeok (2003, August 27). The warrant issued to 3 public service worker taking out customer personal information. *YTN News*.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4&aid=0000043528>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3). *Privacy guidelines*.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Privacy Policy*. Retrieved from http://www.nl.go.kr/nl/c6/page1_1.jsp
- Yoon, Seoki (2005, September 9).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uman rights controversy due to fingerprint information needs. *Yonhap news*. Retrieved fro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094807>

Yun, Dasol (2010, September 27). Have you ever seen the reusable paper written personal information? Korea University News. Retrieved from <http://www.kuke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89>

